

1 교육기관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

비자 <유학>에 관련된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아,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⇒ 현재 재적하고 있는 교육기관 내에서 재적처를 이동해 교육을 받거나, 이제까지 재정하던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갱신 가능

⇒ 일본어교육만을 받는 경우에는 통상 2년간 체류가 인정되는데 이를 초과하더라도 갱신 가능

⇒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일에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 가능

2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

(1) 2020년 교육기관을 졸업한 분이 귀국편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본국내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에는 비자를 <특정활동(6개월)>로 변경 가능

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1주일에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가 인정된다.

(2) 2020년에 교육기관을 졸업한 유학생으로 <유학>비자를 가지고 있으며, 자격외활동을 허가받은 분이 귀국편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본국내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 졸업후에도 1주일에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가 인정된다.

3 졸업후 취업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

요건을 충족하면 <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> 등의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.

4 졸업후에도 계속해서 본국에서 취직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(대학, 고등전문학교, 전문학교전문과정을 졸업한 유학생에 한한다.)

<특정활동>과 관련된 비자로 변경허가를 받아 졸업후 1년간 취업활동을 행할 수 있다.

⇒ 보통 취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졸업후 1년간 체류가 인정되나 이를 초과하더라도 갱신 가능

⇒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일에 28시간이내의 아르바이트가 허용